

서울특별시 영화창작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165
------	------

2019. 11. 26.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2019. 11.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경제정책실장 조인동)

1. 제안이유

가. ‘영화창작공간 운영’은 영화창작자의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서울 영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 서울을 한국 영화창작의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목적의 사업으로,
- 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영화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적정성 심의 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업명: 영화창작공간 운영
- 나. 위탁기간 : 3년 (2020.1.~2022.12.)
- 다. 소요예산 : 1,814백만원('20년 예산)
- 라.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마. 위탁사무내용
 - 영화창작공간 시설 및 장비의 구축 및 유지·보수
 - 입주 대상자 모집, 심사 등 입주자 선정·지원
 - 입주자 관리 및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 영화창작공간의 홍보 및 영화인 네트워크 지원 활동
 - 기타 공공 창작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등

바.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제7조 및 제10조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영화창작공간 운영’은 영화창작자의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영상 및 영화산업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영화관련 경험 및 역량이 축적된 전문적인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 필요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동의안의 개요

- 동의안은 영화 창작자를 위한 공간 제공과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영화창작공간’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나. 영화창작공간 운영 현황

- 영화창작공간은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영상 기획·개발 및 제작을 지원하는 시설로, 2008년부터 DMC 첨단산업센터에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음.

<영화창작공간 개요>

- 소재지 : 마포구 상암동 1580번지 첨단산업센터
- 규모 : 전용 4,588㎡(계약면적 7,898㎡)
- 입주대상 : 영화감독·PD 58명, 작가 42명,
영화제작사 12팀(프로덕션 오피스),
영화제작사 5팀(오피스 존)
- 시설개요

구 분	기획개발 공간				제작 공간
	원스톱 지원	일반지원		1인 기업지원	제작실 지원
	2층 (감독존)	1층 (작가존)	8층 (피디존)	2층 (오피스존)	5층 (프로덕션 존)
규 모	1,719.11㎡ (997㎡)	1,146.85㎡ (665㎡)	2,946.11㎡ (1,709㎡)	315.7㎡ (190㎡)	1,770㎡ (1,027㎡)
시 설 구 성	창작실, 세미나실 등	집필실, 자료실 등	기획실, 비즈니스지원 실 등	제작실 등	제작실, 회의실 등

- 서울시는 그 동안 이 사업을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사업 등 3개의 사업과 통합하여 일괄 민간위탁하였으나, 영상산업 지원사업의 대상과 성격에 맞춰 각각 분리 위탁하는 것으로 개편되었음(2019.8월).

<영상산업 지원 사업 개편 현황 >

사무명		사무명
	서울촬영 지원 (민간보조)	서울촬영 지원 (민간위탁)
영상산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해외영상물 서울 로케이션 마케팅 지원	영화창작공간 운영 (민간위탁)
	영화창작공간 운영	
	서울배경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	
	서울배경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 (민간위탁)	서울배경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 (민간위탁)

- 현재 ‘사단법인 서울영상위원회’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돼 영화창작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감독·PD·작가에게 입주공간을 지원하고 창작지원 프로그램, 시나리오 모니터링, 우수 한국영화 기획개발비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서울영상위원회 개요>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02. 2. 19.)
- 설립목적 : 국내·외 영화촬영 및 제작지원, 서울 영상산업 관련 사업 추진
- 소재지 : DMC첨단산업센터 내
- 마포구 성암로 330, DMC 첨단산업센터 C동 114호
- 대표 : 이장호(영화감독)
- 조직구성 : 임원 18인 / 1처 6팀 1센터

- 입주공간은 지원대상에 따라 층별로 구분되어 있고(감독존 2층, PD존 8층, 작가존 1층), 입주대상자에게는 창작을 위한 멘토링, 입주자 간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을 비롯해 촬영지원, 해외영상물 서울 로케이션 마케팅 등 다른 영상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입주공간 현황>

구 분	기획개발공간		
	원스톱지원	일반지원	
	감독존(2층)	피디존(8층)	작가존(1층)
모집분야	우수한국영화 및 국제공동제작 영화		우수한국영화
모집대상 및 인원	영화감독·프로듀서 54명		영화 시나리오작가 개인 20명 오픈 12명(2M)-별도 개별 10명-별도
	독립영화(감독/프로듀서)4명 이상		
모집형태	정기모집		
입주기간	12개월('19. 4~'20. 3)		
지원사항	공통 ① 영화창작공간 입주 지원 ② 창작강좌 운영 및 소재 개발을 위한 멘토링 지원 ③ 입주자간 교류 및 네트워크 연계 지원 ④ 타 영상사업 연계지원		

- 또한, 전문강좌(영화인 대상, 월 2회), 교양강좌(일반인 대상, 연 2회), 심화전문강좌(입주자와 일반인, 연 6회) 등 대상별 교육을 실시하고, 입주자를 대상으로 융합형 체험강의(연 1회)와 작품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그 외에도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과 시나리오 단계별로 모니터링을 지원하며, 취약한 기획개발 분야를 활성화하고자 우수 한국영화 기획 개발비 종합공모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기획개발비 종합공모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창작공간 입주자에서 전 영화인으로 확대
- 선정 분야 : 감독·PD 대상 → 기획개발비 지원(1인당 1천만원, 총 1억 4천만원)
작가 대상 → 입주공간 제공(10명), 상금 총 8천만원
- 예산(2019년) : 2억 2,800만원

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여부

- 영화창작공간의 입주대상자 선정과 멘토링, 영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 시나리오 모니터링, 우수 한국영화 기획개발비 종합공모 사업 등은 영화산업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서울시 직영보다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인 사업방식으로 판단됨.
- 다만, 일반적인 민간위탁 사업과 달리 우수 한국영화 기획개발비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을 선정해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있어 심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서울영상위원회는 별도의 심사 인력풀없이 임의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사무처장이 심사에 참여하는 등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 한편,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서는 동의안과 예산안은 법령이나 조례 제·개정,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회 동의 과정에서의 보류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회기에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집행부가 수립한 자체 지침을 준수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영화창작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165
----------	------

제출년월일 : 2019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영화창작공간 운영’은 영화창작자의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서울 영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서울을 한국 영화창작의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목적의 사업으로,
- 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영화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 및 전문 지식,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적정성 심의 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업명 : 영화창작공간 운영
- 나. 위탁기간 : 3년 (2020.1.~2022.12.)
- 다. 소요예산 : 1,814백만원('20년 예산)
- 라.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마. 위탁사무내용

- 영화창작공간 시설 및 장비의 구축 및 유지·보수
- 입주 대상자 모집, 심사 등 입주자 선정·지원
- 입주자 관리 및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 영화창작공간의 홍보 및 영화인 네트워크 지원 활동
- 기타 공공 창작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등

바.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제7조 및 제10조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영화창작공간 운영’은 영화창작자의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영상 및 영화산업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영화관련 경험 및 역량이 축적된 전문적인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제7조(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지원) ① 시장은 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 해외에서 제작되는 영상물, 해외 수출용 국내 영상물, 국제공동 제작 영상물 등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상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20년 민간위탁금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경제정책과 콘텐츠산업팀 이효리 (☎ 2133-5236)